

변경 대비 표

■ 펀드명 : 하나행복한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■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5년 02월 04일

■ 변경사유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-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반영

■ 간이투자설명서 변경사항

구 분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표지	기재사항 보완	하나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	하나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)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
요약정보 - 투자비용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요약정보 - 투자실적추이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요약정보 - 운용전문인력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
■ 투자설명서 변경사항

구 분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정보 업데이트	-	<u>2025년 02월 04일:</u>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-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반영
5. 가. 운용전문인력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10. 라. 이	정기갱신	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	<u>1) 이 투자신탁은 최근 3년간</u>

<p>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	<p>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(2024.03.01 시행)</p>	<p><u>변동성[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0.04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/u> (생략)</p> <p>[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] 변경 전 1</p>	<p><u>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(VaR)이 22.13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/u> (현행과 같음)</p> <p>2)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어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(VaR)을 기초로 시장위험 등을 반영한 투자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. 최대손실 예상액(VaR)은 과거 3년 일간수익률에서 2.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 환산 보정계수($\sqrt{250}$)를 곱하여 산출합니다.</p> <p>[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] 변경 후 1</p>
<p>11. 나. 3)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</p>	<p>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(2024.03.01 시행)</p>	<p>-</p>	<p>(환매가능여부 표 추가)</p>
<p>13.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13.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</p>	<p>정기갱신</p>	<p>-</p>	<p><u>정보 업데이트</u></p>

예시표			
14. 나. 과세 1)투자신탁에 대한 과세	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반영(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정)	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-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(추가)	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-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-2025 년 1 월 1 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절차가 없으며,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 등)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(이자·배당소득)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(세전기준)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라. 운용자산규모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
[변경 전 1]

위험등급	1 등급	2 등급	3 등급	4 등급	5 등급	6 등급
	매우 높은 위험	높은 위험	다소 높은 위험	보통 위험	낮은 위험	매우 낮은 위험
표준편차	25% 초과	25% 이하	15% 이하	10% 이하	5% 이하	0.5% 이하

주 1)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자산운용(주)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,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습니다.

[변경 후 1]

하나자산운용(주)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와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(VaR)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6 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.

위험등급		위험등급의 의미		유의사항
		투자자산 기준 (설정 3년미만 펀드)	VaR*기준 (설정 3년이상 펀드)	
1등급	매우높은 위험	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%를초과하는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50% 초과	위험선호도가 (매우)높은 투자자를 위함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(매우)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,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
2등급	높은 위험	①고위험자산에 80%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50% 이하	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
3등급	다소높은 위험	①고위험자산에 80%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%이하인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30% 이하	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
4등급	보통위험	①고위험자산에 50%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에 최소 60%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	20% 이하	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, 예·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

				상품입니다.
5등급	낮은위험	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%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10% 이하	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,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
6등급	매우낮은위험	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②단기국공채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	1% 이하	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,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

- 1) VaR(Value at Risk)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. 상기 표상 VaR 값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 년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**22.13%**의 손실(신뢰구간 97.5%)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
- 2)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자산운용(주)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,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분류기준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3) "고위험자산"은 주식, 상품, REITs, 투기등급채권(BB+ 등급 이하),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.
- 4) "중위험자산"은 채권(BBB-등급 이상), CP(A3 등급 이상),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.
- 5) "저위험자산"은 국공채, 지방채, 회사채(A-등급 이상), CP(A2-등급 이상),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
- 6)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,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.
- 7) 모자형펀드의 경우,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.
- 8)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(Fund of Funds) 형태의 펀드의 경우,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.
- 9) 최대손실률이라 함은,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,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률을 말합니다. 다만,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률에도 불구하고,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,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10)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, 위험등급이 분류됩니다.

